

2024년도 문화유산위원회

제2차 중능문화유산분과 위원회 회의록

- ▣ 회의일시 : 2024. 6. 18. (화요일), 14:00 ~ 16:00
- ▣ 장 소 :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
- ▣ 출석위원 : 홍승재(위원장), 김문식, 남효대, 배웅규, 소현수,
이시영, 이훈, 장호수, 조재모, 홍보식, 홍석주
(이상 11명)
- ▣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: 이하 자료와 같음

목 차

【심의사항】

- 1 파주 장릉 주변 공장시설신축 및 부지조성
- 2 구리 동구릉 주변 주상복합 신축(허가변경)
- 3 (사적)파주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조정
- 4 (사적)남양주 홍릉과 유릉 외 6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- 5 (사적)고양 서오릉 및 서삼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
【보고사항】

- 1 궁능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관련 안전부의 기준(개정)
- 2 경복궁 모두를 위한(무장애) 공간 조성 사업 보고
- 3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

심 의 사 항

【 심의사항 】

안건번호 공능 2024-06-01

1. 파주 장릉 주변 공장시설신축 및 부지조성

가. 제안사항

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「파주 장릉」 주변 공장시설 부지조성 및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파주 장릉 주변에 공장시설 부지조성 및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
-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('24.3.19.) 부결 :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유산명 : 파주 장릉(사적)
 - 소재지 : 경기도 파주시 장릉로 90(탄현면)
- (3) 신청내용
 - 위치 :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852 외 9필지(문화유산구역에서 81m 이격)
 - 허용기준 2구역(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)
 - 사업내용 : 공장시설 부지조성 및 신축

구분	기존('24.3.19./부결)	금회(안)	비고
대지면적	4,999㎡ (건축용지 4,933㎡, 도로용지 66㎡)	좌동	
건축(연)면적	1,947㎡(4,748.67㎡)	좌동	
건축규모	1개동, 지상3층, 일반철골조 / 25.3m	2개동, 지상2층, 일반철골조 / 17m	지하저수조 1동 추가, 높이 83m 감소
부지조성	식생블럭(H=0~3.4m) : L=139.3m, 보강토옹벽(H=0~4.5m) L=188.9m 부지계획고 : 25.5m 절토량(최고절토고) : 3,758.11㎡(3.4m) 성토량(최고성토고) : 6,060.94㎡(4.5m) 조경식재 : 잣나무 110주, 철쭉나무 640주	식생블럭(H=0~5m) : L=194.1m, 보강토옹벽(H=0~4.5m) L=146.8m 부지계획고 : 23.3~24.1m 절토량(최고절토고) : 4,999.46㎡(5m) 성토량(최고성토고) : 621.13㎡(4.5m) 조경식재 : 잣나무 110주, 철쭉나무 640주	식생블럭 규모증가, 보강토옹벽 길이감소, 부지계획고 변경, 절토량 증가, 성토량 감소

- (4) 신청인 의견 : 없음

라. 참고사항

- (1) 현지조사의견(‘24.3.6./문화유산위원 ○○○, 문화유산전문위원 ○○○)
- 해당 대지의 2구역 기준인 평지붕 8m 높이 기준을 지나치게 많이 초과한 25.3m로 계획하였으며 인접 대지의 주변 건물 높이 11.2m보다 많이 높음.
 - 장릉 봉분의 표고를 약 50m 정도로 가정하면, 본 시설물의 높이는 50m를 넘을 것으로 보여(중단면도 참고) 장릉에서의 경관 시뮬레이션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 잣나무 차폐식재로도 시설물은 차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.
 - 옹벽 높이가 4.5m로 기준인 3m를 훨씬 초과하였음.
 - 추후 주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.

마. 의결사항

- 부결
 -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1명 / 부결 11명

【 심의사항 】

안전번호 공능 2024-06-02

2. 구리 동구릉 주변 주상복합 신축(허가변경)

가. 제안사항

경기도 구리시 소재 사적 「구리 동구릉」 주변 주상복합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(허가변경)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구리 동구릉 주변에 주상복합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
 - '22년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(9.20./10.18./12.20.) / 부결 :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
 - '23년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('23.1.17.) / 조건부가결 :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최고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할 것
 - '23.10.23.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 : 허가(자체처리)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유산명 : 구리 동구릉(사적)
 - 소재지 :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97(인창동)
- (3) 신청내용
 - 위치 :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701, 701-1, 701-2 (문화유산구역에서 420m 이격)
 - 허용기준 6구역(건축물 최고높이 45m 이하)
 - 사업내용 : 주상복합 신축

구분	기존 ('22.9.20./부결)	기존 ('22.10.18./부결)	기존 ('22.12.20./부결)	기존('23.1.17./조건부가결)	기존('23.10.23./자체처리)	금회(안)
부지 (면적)	인창동 701,701-1 (2,234.7㎡)				인창동 701,701-1, 701-2 (2,500.3㎡)	좌동
건축용도	주상복합					좌동
건축면적	1,563.41㎡	1,564㎡	1,561.69㎡	1,564㎡	1,563.79㎡	1,753.73㎡
연면적	22,135.9㎡	22,039.07㎡	22,129.06㎡	21,782.01㎡	20,460.04㎡	19,564.88㎡
건축규모	2개동, 지하5층 ~ 지상17~23층 (최고높이: 74.6m)	2개동, 지하5층 ~ 지상20층 (최고높이: 63.05m)	1개동, 지하5층 ~ 지상18층 (최고높이: 56.95m)	2개동, 지하5층 ~ 지상17층 (최고높이: 53.8m)	2개동, 지하4층 ~ 지상17층 (최고높이: 53.8m)	2개동, 지하3층 ~ 지상22층 (최고높이: 69.33m)
비고					부지추가, 건축물 위치변경 (469m) 및 평면 변경	건축면적, 높이, 평면 형태 및 배치 등 변경

- (4) 신청인 의견 : 해당 필지는 문화유산구역으로부터 200m 이상 이격된 주거지역이며, 주변에 절대고도가 100m를 초과하는 단지도 다수 확인되고 있음.

라. 참고사항

(1) 현지조사 의견('22.12.16./문화유산위원 〇〇〇, 〇〇〇)

- 주변 지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건물의 높이를 조정했지만 현상변경 허용 기준 높이를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길이가 60미터가 넘는 건물을 판상형으로 계획함으로써 인해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

(2) 현지조사 의견('22.9.14./문화유산위원 〇〇〇, 문화유산전문위원 〇〇〇)

- 본 건은 구리 동구릉 문화유산 주변 6구역에 위치한 신축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현지조사 건입, 6구역 허용 최대높이는 45m로서 계획안의 최고높이 74.6m는 이를 훨씬 초과하였음
- 승릉의 능침으로부터 육안으로 확인 결과 신축건물이 능으로부터 조망될 것으로 예상됨
- 이를 종합할 때 신축건물이 문화유산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

마. 의결사항

- 부결
 -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1명 / 부결 11명

【 심의사항 】

안건번호 공능 2024-06-03

3. 파주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
가. 제안사항

경기도 소재 사적 「파주 장릉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사적 「파주 장릉」 문화유산구역 필지 중 2008년 추가지정되었다가 2023년 해제된 1필지에 대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2구역으로 조정하기 위해 신청한 사항임
 - 사적분과 위원회('23.9.13.) 문화유산구역 조정(일부 해제) 가결
: 사적 파주 장릉 문화유산구역과 지형적으로 연속성이 단절되어 있고 일체성과 장소성이 미미함에 따라 사적 해제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유산 : 사적 「파주 장릉」 (경기도 파주시 장릉로 90)
- (3) 신청내용
 - 위치 :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792-7
 - 주요내용 : 해제 지정된 필지를 허용기준 2구역으로 조정
- (4) 신청인 의견 : 없음

라. 참고사항

- (1) 파주시 전문가 자문 의견('24.05.01./○○○ 위원, ○○○ 위원, ○○○ 위원)
 -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792-7 부지는 문화유산구역 해제에 따라 허용기준 구역 조정이 필요한 상태이다. 현지 시찰 결과 주변 현황 및 인근 지번 구역 경계에 따라 허용기준 2구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.

(2) 주민공람 의견서

- 개인 토지(792-27외)를 문화유산구역으로 편입, 재산권 행사를 막고 어떠한 보상도 없으므로 재산권 행사 가능한 2구역으로 변경 요청함.
- 갈현3리 마을의 경우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침해와 불이익이 있음. 좀 더 완화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허용 기준이 되어야 하며, 이러한 침해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면 도로확충, 복지 시설 등 갈현3리 마을에 지원을 해줘야 함.

마. 의결사항

- 원안가결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1명 / 원안가결 11명

【 심의사항 】

안건번호 공능 2024-06-04

4. 남양주 흥릉과 유릉 외 6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
가. 제안사항

경기도 소재 사적 「남양주 흥릉과 유릉」, 「남양주 사릉·광해군묘·성묘·안빈묘」, 「남양주 순강원」, 「남양주 영빈묘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「남양주 흥릉과 유릉」, 「남양주 사릉·광해군묘·성묘·안빈묘」, 「남양주 순강원」, 「남양주 영빈묘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
-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('23.10.17.) 조건부가결 : 금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시행할 것 (허용기준 내 문구 변경 및 공통사항 내용 조정)
-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('24.1.16.) 접수 (허용기준 구역 표기 조정안)

다. 주요내용

(1) 신청인 : ○○○

(2) 대상문화유산

- 사적 「남양주 흥릉과 유릉」 (경기도 남양주시 흥유릉로 352-1)
- 사적 「남양주 사릉」 (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180)
- 사적 「남양주 광해군묘」 (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337-4)
- 사적 「남양주 성묘」 (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312-8)
- 사적 「남양주 안빈묘」 (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417-1)
- 사적 「남양주 순강원」 (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2로 84-31 외)
- 사적 「남양주 영빈묘」 (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5)

(3) 신청내용 :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
○ 주요내용

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

라. 검토의견(복원정비과)

- 금회 남양주시에서 신청한 국가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 기준 조정 신청건은 국가지정유산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규제 행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우리 청(역사유적과)에서 용역 발주한 '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정합성 및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' 결과에 따라 신청된 사항임.
- 시·도 조례의 용도지역별 범위와의 정합성을 검토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의 범위를 조정하였으며 일부 개정된 「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」에 부합되도록 용어 및 내용 등을 조정하였음.

마. 참고사항

- 경기도 조례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

구분	국가지정유산		시·도지정유산	
	도시지역 중 주거·상업·공업지역	도시지역 중 녹지·관리·농림·자연환경보전지역	도시지역 중 주거·상업·공업지역	도시지역 중 녹지·관리·농림·자연환경보전지역
경기	200	500	200	300

- 김포 장릉 검단신도시 행정소송 결과 주거·상업·공업지역의 200~500m 범위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
 - 공사중지명령 취소 행정소송 대법원 확정판결 : 문화재청 상고 기각 ('23.12.28. / '24.1.11. / '24.3.14.)

바. 의결사항

- 원안가결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1명 / 원안가결 11명

【 심의사항 】

안건번호 공능 2024-06-05

5. 고양 서오릉 및 고양 서삼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
가. 제안사항

경기도 소재 사적 「고양 서오릉」 및 「고양 서삼릉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「고양 서오릉」, 「고양 서삼릉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
-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('23.10.17.) 조건부가결 : 금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시행할 것 (허용기준 내 문구 변경 및 공통사항 내용 조정)
-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('24.1.16.) 접수 (허용기준 구역 표기 조정안)
- 공능문화유산분과 위원회('24.5.21.) 보류 : 심도있는 사전 검토 필요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유산
 - 사적 「고양 서오릉」 (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75-92)
 - 사적 「고양 서삼릉」 (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33-126)
- (3) 신청내용 :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 - 주요내용
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

라. 검토의견(복원정비과)

- 금회 고양시에서 신청한 국가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신청건은 국가지정유산 규제외 합리적 조정을 통한 규제 행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우리 청(역사유적과)에서 용역 발주한 '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정합성 및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' 결과에 따라 신청된 사항임.

- 시·도 조례의 용도지역별 범위와의 정합성을 검토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의 범위를 조정하였으며 일부 개정된 「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」에 부합되도록 용어 및 내용 등을 조정하였음.

마. 참고사항

- 경기도 조례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

구분	국가지정유산		시·도지정유산	
	도시지역 중 주거·상업·공업지역	도시지역 중 녹지·관리·농림·자연환경보전지역	도시지역 중 주거·상업·공업지역	도시지역 중 녹지·관리·농림·자연환경보전지역
경기	200	500	200	300

- 김포 장릉 검단신도시 행정소송 결과 주거·상업·공업지역의 200~500m 범위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
 - 공사중지명령 취소 행정소송 대법원 확정판결 : 문화재청 상고 기각 ('23.12.28. / '24.1.11. / '24.3.14.)

바. 의결사항

- 원안가결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1명 / 원안가결 11명

보고사항

【 보고사항 】

안전번호 궁능 2024-06-06

1. 궁·능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관련 안전부의 기준(개정)

가. 제안사항

국가유산 체제 전환 등에 따라 ‘궁·능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관련 안전부의 기준’의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나. 보고사유

‘궁·능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관련 안전부의 기준’을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한 사항임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(2) 대상문화유산명 : 궁능유적본부 소관 촬영·장소 사용 대상 문화유산 일원(궁궐·왕릉)
(3) 보고내용

Table with 2 columns: 현행 (Current) and 개정안 (Revised). It compares the existing standards for palace/mausoleum photography and site usage with the proposed revised standards, detailing changes in the purpose clause and safety categories.

제3조(심의) ① 공능문화재분과위원회는 「공·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 및 제32조에서 정한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~ 2. (생략)
3. 기타 공능유적본부장이 문화재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

[별표]

공능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대상

구분	심 의 대 상
촬영	1. 국보 및 보물인 전각 내부에서의 촬영 2.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 3.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촬영 가. 촬영을 위해 입장하는 인원이 60명 이상일 경우의 촬영 나. 크레인(20톤 초과) 등 대형장비(발전차는 제외) 반입이 필요한 촬영 4. 공능유적기관의 장이 <u>문화재</u> 보존 관리를 위해 심의 요청한 촬영
장소 사용	1. 국보 및 보물인 전각 내부에서의 장소사용 2.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장소사용 3.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장소사용 가. 공연을 목적으로 한 100㎡ 이상의 무대설치 나. 참여인원 300명 또는 관람석 150석 이상 규모의 행사 4. 공능유적기관의 장이 <u>문화재</u> 보존 관리를 위해 심의 요청한 장소사용

제3조(심의) ① 공능문화유산분과위원회는 「공·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 및 제32조에서 정한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기타 공능유적본부장이 문화유산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

[별표]

공능문화유산분과위원회 심의대상

구분	심 의 대 상
촬영	1. 국보 및 보물인 전각 내부에서의 촬영 2.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 3.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촬영 가. 촬영을 위해 입장하는 인원이 60명 이상일 경우의 촬영 나. 크레인(20톤 초과) 등 대형장비(발전차는 제외) 반입이 필요한 촬영 4. 공능유적기관의 장이 <u>문화유산</u> 보존 관리를 위해 심의 요청한 촬영
장소 사용	1. 국보 및 보물인 전각 내부에서의 장소사용 2.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장소사용 3.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장소사용 가. 공연을 목적으로 한 100㎡ 이상의 무대설치 나. 참여인원 300명 또는 관람석 150석 이상 규모의 행사 4. 공능유적기관의 장이 <u>문화유산</u> 보존 관리를 위해 심의 요청한 장소사용

(4) 신청인 의견

-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라. 의결사항

- 접수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1명 / 원안가결 11명

2. 경북궁 모두를 위한(무장애) 공간 조성 사업 보고

가. 보고사항

문화유산 경북궁을 장애, 연령, 성별 등 불편없이 국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'경북궁 모두를 위한(무장애) 공간 조성 사업'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나. 보고사유

- 대표 문화유산인 경북궁을 노약자, 장애인, 임산부 등 차별없이 모두가 이용하는 모두를 위한(무장애)공간 조성, 확산 기반을 마련함으로 수요자 중심의 문턱 없는 문화유산 향유권 확보하고자 본 사업을 실시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유산명 : 경북궁 (사적 / 1963.1.21. 지정)
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
- (3) 신청내용
 - 위치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(문화유산구역 내)
 - 사업내용

구분	사업 내용		비고(현황)
모두를 위한 (무장애)공간 조성	(매개시설)	(경사로) 노후 및 기울기 미달 132개소 신규 제작 설치 - 현 위치 철거 후 신규 재설치 (안전 목책) 전각 기단 안전 목책 36개소 제작 설치 - 고정형 아닌 이동식 목책 제작 설치	(경사로) 기존 164개소 (안전 목책) 기존 15개소
	(이용시설)	(포장) 주요 관람 동선 포장 1,832㎡ - (흥례문, 수정전, 집옥재 권역 등) (휴지통) 노후 휴지통 14개소 신규 설치	(포장) 경화마사토 포장 (경희루, 향원정 권역)
	(위생시설)	(화장실) 무선 호출기 30개소 및 점자안내판, 가변실 핸드레일 22개소 설치 등	(화장실) 경내 6개소

(4) 신청인 의견

- 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인 경북궁을 장애, 연령, 성별 등 장애없이 누구나 향유할 수 있고, 접근성을 확보 및 안전하고 쾌적하며 보편적 관람 환경을 조성위해 본 사업 시행하고자 함

라. 참고사항

(1) 관계전문가 자문회의(‘24.4.25./문화유산위원 〇〇〇, 〇〇〇)

- 경북궁 관람로는 해빙기와 우천시 등에는 바닥이 질퍽질퍽하여 관람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,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으로 개선이 필요함
- 마사토를 사용하여 자연적인 질감 및 색상을 유지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 설계하도록 함
- 주요 구간별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법 적용을 달리하는 등 배수 체계 개선 방안을 고려하도록 함

마. 의결사항

- 접수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1명 / 원안가결 11명

【 보고사항 】

안전번호 공능 2024-06-08

3.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

가. 보고사항

경기도 소재 사적 「파주 장릉」 기존사면 성토 및 구조물 설치 1건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자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나. 처리내용

문 화 재	소재지	신청인	사 업 내 용	처리결과	처리일자			
(사적) 파주 장릉	경기도 파주시	○○○	<기존사면 성토 및 구조물 설치(허가변경)> ○ 위치: 파주시 탄현면 범흥리 498-2, -6, -10 (3구역, 문화유산구역과 80m 이격) - 인접석축 L형 옹벽 연결마감설치에 따른 지면(498-10) 추가 ○ 사업내용	허가	‘24.5.2.			
			최초허가 (‘23.12.11.)			변경허가 (‘24.4.12.)*	금회 변경허가	
			대지 면적			2,459㎡	변동없음	변동없음
			총성 토량			2,147.04㎡	234.38㎡ (감 1,912.66㎡)	234.38㎡ (변동없음)
L형 옹벽	H:1.0~4.7m / L:95m	H:0.2~4.2m / L:94m (규모 감소)	H:0.7~4.7m / L:97.5m (높이 0.5m 증가, / 길이 3.5m 증가)					
* 설계 형태는 동일하면서 규모가 최초 허가보다 감소하는 경우로 경미한 행위 기준에 해당되어 파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허가								

다. 의결사항

- 접수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1명 / 원안가결 11명